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제 목 : 26년 6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 대 상 자 : 90누36** 등 99건
- ◎ 공고기간 : 26. 7. 3. - 26. 7. 23.(20일 이상)
- ◎ 문 의 처 :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 (☎054-950-6594)
- ◎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 감경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일

고령군

